

1. 개정이유

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,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19491호, 2023. 6. 20. 공포, 2024. 6. 21. 시행)됨에 따라 이 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(안 제6조)

- 1) 양성기관 교육 선택과목에 사회복지학, 반려동물학을 추가하여 선택과목의 범위를 넓힘(안 제6조 별표1)
- 2)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식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기 위해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식 변경(안 제6조 별지 제6호 서식)

나.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8조~제11조 신설)

- 1) 인증의 신청 및 갱신신청의 절차를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 신설)
- 2)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를 정하여 시설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- 3) 인증 및 갱신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함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인증의 신청)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.

③ 제2항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.

④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조(인증의 갱신)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일 인증시설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갱신 신

청을 해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갱신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0조(인증 표시 및 사용)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증 표시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치유농업시설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.

-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 및 인증패는 별표 3과 같다.

제11조(인증·갱신 수수료)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·갱신 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.)는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. 수수료의 세부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표 1 제2호의 교육과목란 중 “진로상담”을 “진로상담, 사회복지학, 반려동물학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“사업자등록증명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(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중 “통해 사업자등록증명”을 “통하여”로 하며, “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”을 “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”으로, “해당 서류를 직접”을 “직접 “사업자등록증” 사본을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표시 및 인증패(제10조제2항 관련)

1.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표시

가. 도안 모형



나. 표시방법

- 1) 인증 표시의 기본형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위와 같이 하고, 로고는 연두색, 글자는 진녹색으로 한다.
- 2) 비례 적용 및 최소 사용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

비례 적용 (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)	최소사용 크기
	20mm

2.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패
가. 도안 모형



나. 표시 방법

- 1)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표시는 하트와 새싹을 감싸고 있는 손이 결합된 상징 표시(symbol mark)를 사용하며, 하단 부분은 ‘우수치유농업시설’ 명칭을 표기한다.
- 2) 인증 표시 아래에는 인증받은 농장명칭, 인증번호, 인증유효기간(인증을 받은 날짜와 인증이 만료되는 날짜), 인증기관 명칭(농촌진흥청)을 표기한다.
- 3) 인증 표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고, 이 경우 인증번호와 유효기간은 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.

우수 치유농업시설 [] 인증
[]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	
신 청 인	기관(농장)명	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	
	주소		전화번호		
			전자우편		
개 요	서비스 시설면적	실내시설	m ²	실외시설	m ²
	대표 프로그램명 (대상·목적)				
	전담인력 자격현황				

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
위와 같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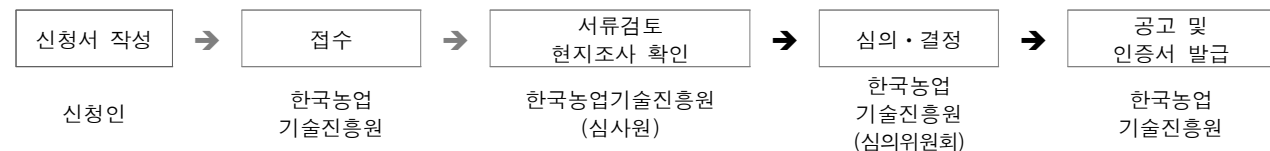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1부.	수수료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름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

인증번호	제 호		
치유농업시설명	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대표 프로그램명 (목적·대상)			
대표자		생년월일	
소재지(주소)			
유효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	

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
위와 같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합니다.

년 월 일

농촌진흥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이 취소됩니다.
2.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3. 인증을 받지 않은 치유농업시설에 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4. 인증을 받지 않은 치유농업시설에 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와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5.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.

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발급 대장

번호	기관·단체명	대표자	소재지(주소)	유효기간	인증서	
					발급일	수령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(인증의 신청) 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 <u>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.</u> <u>③ 제2항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.</u> <u>④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9조(인증의 갱신) ①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동일 인증시설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치유농업시설 유효기간</u>

<신 설>

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갱신 신청해야 한다.

② 제1항의 갱신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0조(인증 표시 및 사용)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치유농업시설에서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.

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 및 인증패는 별표 3과 같다.

제11조(인증·갱신 수수료)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·갱신 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.)는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. 수수료의 세부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